

“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행복 대한민국”



한국산업인력공단
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

보 도 자 료

“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”

- ▶ 보도 일시: 2012. 3. 9(금) 조간
- <인터넷 3. 8(목) 12:00 이후>
- ▶ 총 4 쪽

◆기업지원팀 팀장 윤석호 과장 정은영
◆홍보실 실장 김대수 과장 엄현석

☎ 02-3271-9373, 02-3271-9085

“중소기업에 체계적인 현장훈련 프로그램 지원”

- 한국산업인력공단,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
- 기업 당 체계적 현장훈련 비용 최대 700만원 지원

- ☐ 한국산업인력공단(이사장 송영중)은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모집한다.
- ☐ 체계적 현장훈련이란 사업장 내 고속련 근로자가 신입사원 등 미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.
- 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, 교육비, 임금지원, 훈련프로그램 개발수당, 외부 전문가 자문료 등 기업 당 7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.
- ☐ 이 사업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(중소기업)이 참여할 수 있으나, 숙박업, 부동산업,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.

- 또한 대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중소기업인 협력사나 회원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.
- 공단은 중소기업이 사내강사와 훈련프로그램 등을 갖춰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기간 중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www.hrdkorea.or.kr)를 참조하면 된다.

붙임 : 2012년도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

2012년도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시행계획

1.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을 작업장 내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하여 축적·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(사내강사 양성,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)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

2. 사업목표 및 예산 : 300개 기업, 2,100백만원

3. 지원대상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
 - 대기업·사업주단체 등의 운영기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·신청하는 경우 지원(컨소시엄형)

지원제외 대상업종

-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(사업주단체는 제외)
- ② 숙박업(콘도미니엄업 제외), 부동산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(의료)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(사업주단체는 제외), 국제 및 외국기관, 기타 개인서비스업
- ③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업종,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업종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
- ④ 「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」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
- ⑤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지원내용

- 지원방법 :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,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,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,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
- 지원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
- 지원금 : 기업당 700만원 한도
 - 지원금 지급 : 훈련계획 승인시 사전지원금(70%)을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집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사후지원금(30%) 지급
 - 기업부담금 : 인쇄비, 교재 구입비,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% 이상을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

지원항목	지 원 내 용	지원한도
교육비 (담당자/ 트레이너)	○ 교육비 - 공단 주관과정 : 전액 실비 지원 - 기업 자율과정 :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(트레이너에 한함) ○ 임금 지원 : 시간당 최저 임금의 200% 한도 (공단 주관과정에 참여한 트레이너에 한함)	200만원 한도
직무분석/ 모듈개발	○ 훈련계획서/직무분석 : 수당 지원 - 시간당 25,000원, 1일 10만원, 총 40만원 한도 ○ 모듈개발비 : A4용지 1매당 3만원 ○ 인쇄비 : 50만원 한도(자부담 20%) ○ 교재구입비 : 20만원 한도(자부담 20%) ○ 임금 지원 : 시간당 최저 임금의 200% 한도 (트레이너에 한함)	300만원 한도
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	○ 수당 : 시간당 25,000원, 1일 10만원 한도 (트레이너에 한함) ○ 임금 지원 : 시간당 최저임금의 200% 한도 (트레이너에 한함)	300만원 한도
외부전문가 자문료	○ 자문료 : 1일 40만원 한도(자부담 20%)	200만원 한도

○ 지원요건

-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휴·폐업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(접수마감일 기준)
-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
- 기업부담금 필요항목에 대하여는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

5. 시행절차

